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6. 10.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95. 1. 5 소하천정비법이 공포되고 '95. 7. 6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증진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 및 유사용도의 토지가격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등과 재해복구 및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 사용료 및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라.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안 제5조).
- 마. 허가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17조).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및 소하천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등 점·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수익자부담금·부당이득금·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③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④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법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부당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소하천등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납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정수 또는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을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부과 대상자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서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8조 (부담금 부과액 결정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담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담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9조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의 가액 및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월이내에 부과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2조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당해 수의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점용료등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소하천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별표 1의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끌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수수료의 징수) 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이천시의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이미 납부한 허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허가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등) 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 그 공사 또는 점·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의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안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소하천에 한함)</p> <p>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소하천에 한함)</p>

구 분	산 정 기 준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p> <p>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³ ~ 0.5m³/sec까지 연액 10,000원, 0.5m³/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5. 지하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가목의 1/3 ※ 월 10,000m³미만은 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p>

구 분	산 정 기 준
7. 토석·사력의 채취	<p>다만, 농업용수의 배수는 제외한다</p> <p>제4항 가목의 1/4</p> <p>※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가. 소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p> <p>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 용 (소하천에 한함)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으로 그 원자재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 는 10/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 기준 표(제3조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의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소하천 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소하천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 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7.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16조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17조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굴착, 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2. 토석·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점용료의 1/1,000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제1항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점용료의 1/1,000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	없음

※ 허가기준

- 소하천 정비 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 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 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